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59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4. 13.	회부연월일	2022. 4. 13.

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,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·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정비.
  - 현행 : 「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」
  - 개정 : 「논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」
- 나.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다.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(안 제9조)
- 라. 우선구매 촉진·지원을 위한 포상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## 3. 검토의견

-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·지원을 위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안으로
- 지방자치법 제28조,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, 제6조, 제7조, 제15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